



중앙방역대책본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코로나19 격리체계 개선 시행 기준 및 확진자 양성 통보 문자(안) 재안내

1. 관련근거

가. 중앙방역대책본부-7354호('22.02.27) 코로나19 격리체계 개선 시행 기준 안내

2.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기 배포한 '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 격리체계 개선 시행 기준 안내'를 다음과 같이 재강조하오니 다음 지침 개정 전까지 아래 내용을 적극 안내 및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주요 사항

- 세부 기준 및 관련 안내문 붙임 자료 참고

구분		현행	변경
확진자 동거인	관리 대상 구분 기준	· 예방접종력에 따라 격리 또는 수동감시	·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 * 동거인이 어린이집, 유치원, 학교 구성원인 경우 등교(등원) 제한 기준은 해당 기관의 지침에 따름
	관리 방식	· 보건소에서 대상자 구분, 격리 통지, 격리면제 안내, 진단검사 시행	· 보건소는 권고 및 주의 사항을 적시 안내하면서 준수 협조 요청, 진단검사 지원 · 대상자가 권고 및 주의사항 자율 준수
	검사 기준	· 2회 PCR(분류 직후, 6~7일차) 시행	· 1회 PCR(3일 이내) 및 1회 신속항원검사(6~7일차) 권고 * 60세 이상은 두번 모두 PCR 검사
격리통지 방법		· 확진자 등에 대한 격리통지는 문자, SNS 등을 통해 전송 · 확진자에 대한 별도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	· 확진자 등에 대한 격리통지는 문자, SNS 등을 통해 전송 · 확진자에 대한 별도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중단

- 타 시군구로부터 이관받은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는 이관받은 확진자에 대해 조사 및 안내 등 관련 업무를 매일 확인 및 적시에 조치
- 확진자 양성 통보 문자(안) 관련 "문자 발송 시 격리기간 반드시 명시"

- 붙임 1. 코로나19 격리체계 개선 시행 기준 1부.
2. 확진자 양성 통보 문자(안) 1부. 끝.

중앙방역대책본부장



수신자 모든 기관, 시도, 시군구, 학협회

역학조사관 **송영준** 보건연구관 **이상은** 역학조사팀장 **박영준** 전결 2022. 3. 8.

협조자 환자관리팀장 **곽진**

시행 중앙방역대책본부-8952 (2022. 3. 8.) 접수

우 2816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02, 질병관리청 / <http://www.kdca.go.kr>

전화번호 043-719-7957 팩스번호 043-719-7292 / syface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질병정보 공금할때, 감염병이 의심될 때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